

# 

호서대학교 안전공학과



# **Contents**



# 화학사고 개요 및 사례

- ❖ 화학사고 개요
- ❖ 국내외 주요 화학사고 사례







❖ 화학사고(`21.03.18)











### ❖ 화학사고의 정의

"화학사고"란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그리고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의하 듯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림 출처: NCEC Newsletter, Aug. 2019



### ❖ 화학사고의 정의

전술한 원인과 결과의 초래에 대한 정의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로 화학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양 신청된 전체의 산업재해 중 발생형태가 화학물질 누출, 접촉, 화재, 폭발 사고 등 3가지 기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임의 분류하여 화학사고의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

### ❖ 유럽연합 입법지침(Seveso Directive II)

'중대사고'란이 입법지침에 적용되는 설비의 운전과정에서 통제되지 않는 전개로 발생한 한 가지 이상의 위험물질의 대량 누출, 화재 또는 폭발과 이로 인해 즉각 또는 지연되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하여 혹은 설비의 내부 또는 외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사건을 의미한다. <제13조제13호>



### ❖ 국제노동기구 협약(ILO 제174호 Article(d))

"중대사고"란 주요 위험시설 내에서 어떤 활동 중에 발생하고 한 개 이상의 위험물질들로 인해 즉시 또는 시간이 지난 후 근로자, 인근주민, 혹은 환경 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특히 누출, 화재 또는 폭발과 같은 급작스 런 사고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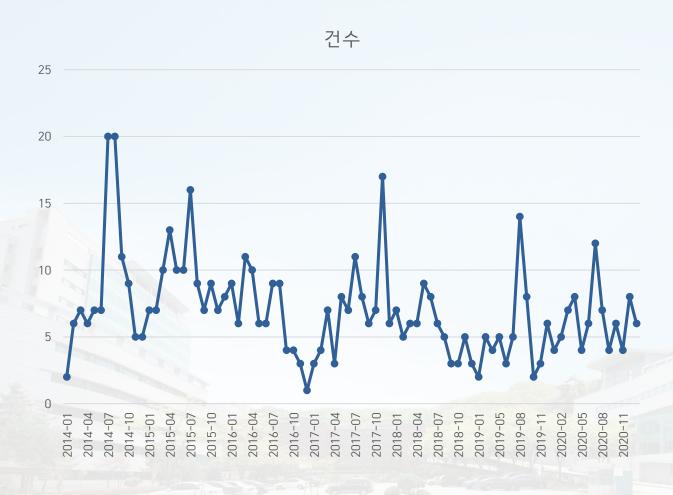
### ❖ 화학사고 발생 현황

발생년도	건수
2014	105
2015	113
2016	78
2017	87
2018	66
2019	57
2020	75
2021(4월)	6





### ❖ 월별 화학사고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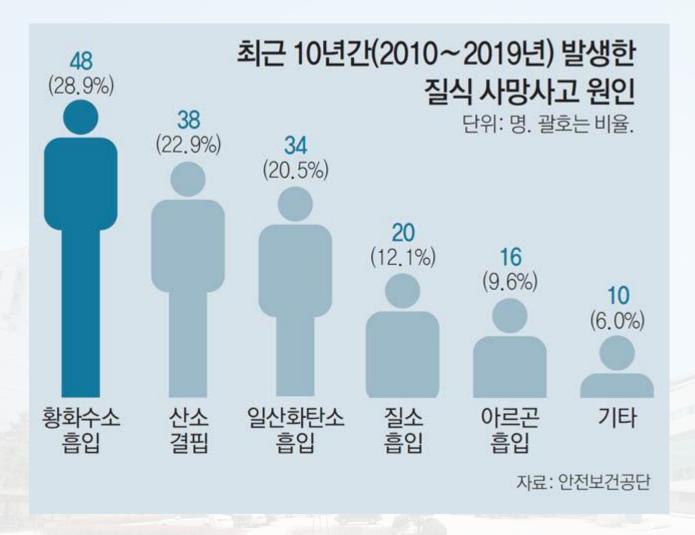


### ❖ 사고사례





### ❖ 질식사고







#### ❖ 질식사고

### 부산 여고생 쓰러뜨린 '황화수소'...흡입만 해도 '질식사'

△ 최율리아나기자 | ○ 승인 2019.08.0523:38 | ○ 댓글 0

### THE DAILYPOST

고농도 노출시 중추신경 마비...치명적인 '독가스'



[데일리포스트=최 율리아나 기자] "황화수소는 저농도 노출할 경우 눈의 점막이나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고농도로 노출되면 세포의 내부호흡이 정지해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실신하거나 호흡이 정지되면서 질식 사망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맹독성 가스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



### ❖ 사고사례

#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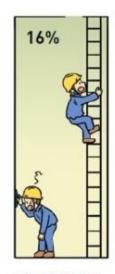


밀폐공간



18%

안전 한계이나 연속 환기가 필요



21% (대기중 산소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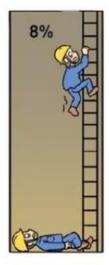
호흡, 맥박의 증가, 두통, 메스꺼움, 토할 것 같음



어지러움증, 토할 것 같음, 근력 저하, 체중지지불능으로 추락(죽음에 이른다)



안면창백, 의식불명, 구토(토한 것이 기도 를 폐쇄하여 질식사)



실신 혼도 7~8분 이내에 사망



순간에 혼도, 호흡정지, 경련, 6분이면 사망

### ❖ 화학 사고 피해









### ❖ 화학 사고 피해











### 국내 · 외 주요 화학사고 사례

### ❖ 화학사고 비교

(한국) 12.9.27(수) 15:43, 불산 누출, 사망5명, 부상 18명

(독일) 12.10.15(수) 13:00, 질산암모늄

#### 최근 5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단위: 명) 9만3292 9만2256 전체 사고 재해자 8만-화재·폭발·누출사고 재해자 2만-1286 1325 1204 1070 1211 2009 2010 2011 2012년 자료: 고용노동부

#### 2000년대 주요 화학물질 유출 사고

매년 20여 건 크고 작은 유출 사고 발생(신고 기준)

연도	주요 사고	피해 규모		
2000	반월공단 폭발 사고	5명 사망, 48명 부상		
2005	여수산업단지 염화수소 유출	65명 중독		
2008	김천 페놀 유출	2명 사망, 14명 부상		
2012 구미산업단지 불화수소 유출		5명 사망		
	화성 불화수소 유출	1명 사망		
	상주 염화수소 유출	-		
2013	청주산업단지 불화수소 유출	1명 부상		
2013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유출	1명 사망, 4명 부상		
	구미 LG실트론공장 질산 불산 유출			
	구미산업단지 염소가스 유출	160여 명 중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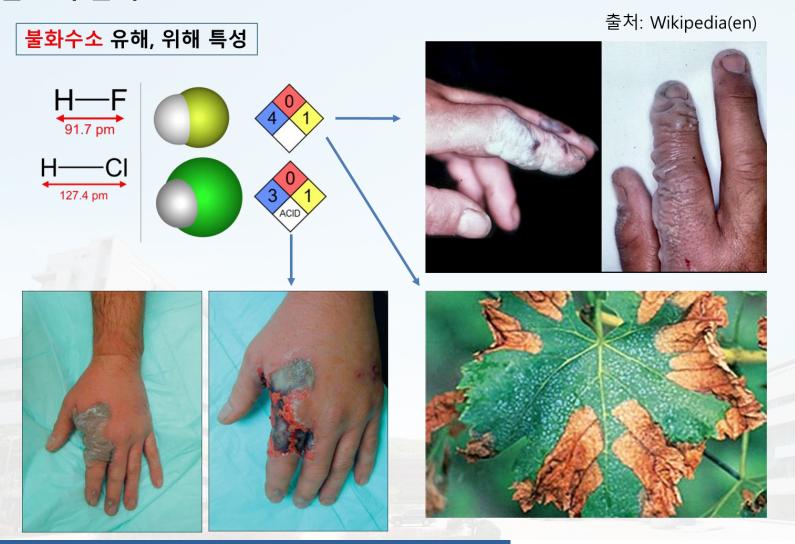
자료: 환경부

구분	독일(하노버)	한국(구미)
사망자수	0명	5명
누출물질	질산암모늄 4톤	불산 8톤
투입인력	지자체, 소방관 등 1,000여명 (화학사고 전문가 100명 포함)	소방관 및 경찰관 350여명
보호장비	투입인원 전원 방독면과 보호복 착용	마스크와 방독면 일부 착용, 화학 보호복 6벌
주민대피	<ul> <li>발생 직후 인근주민 800여명 긴급대피</li> <li>위험지역 반경 확대(500m) 후 주민 1,000여명 추가 대피</li> </ul>	- 사고 다음날 1차 주민복귀
도로관리	- 인근 고속도로 통행금지 - 철도 사고지역 우회통행	- 인근 도로 통제 없었음
특이사항	화학·환경사고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요원이 포함	초동대응시 해당사고분야 전문요원 포함 부재



### 국내 · 외 주요 화학사고 사례

### ❖ 불산 누출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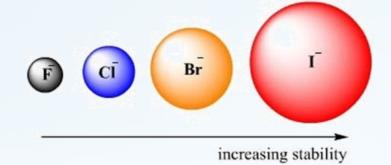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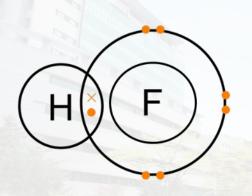
### 국내 · 외 주요 화학사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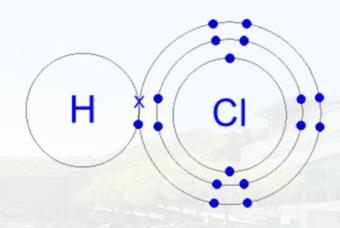
### ❖ 불산 누출사고

불화수소 유해, 위해 특성

출처: Wikipedia(en)







### ❖ 불산 누출사고

#### 불화수소 유해, 위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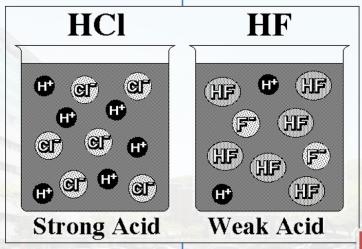
- ▶ 이온화 상수
  - Acid dissociation constant (pKa)

$$egin{align} ext{HA} & 
ightleftharpoons ext{A}^- + ext{H}^+; K_{ ext{a}} = rac{[ ext{A}^-][ ext{H}^+]}{[ ext{HA}]} \ ext{p} K_{ ext{a}} = -\log_{10}(K_{ ext{a}}) \ \end{split}$$

### 염화 수소: HCl

# н<mark>ċi: → :ċi:</mark>

$$pK_a = -7$$



### 불화 수소: HF



$$pK_a = 3.2$$

진한황산/묽은황산은?



### ❖ 불산 누출사고

	루오르화수소 ydrogen fluorio	da			
CAS번	ž.	7664-39-3			
국문유		불화수소산, 안티살 2B			
영문유.		Hydrofluoric acid, Fluorohydric acid, Antisal 2B			
화학물		무기 비산화성 산류			
	학물질관리번호	97-1-382(유독물)			
UN번호	<u> </u>	1790(soln), 1052(gas)			
ERGCH:	용지침번호	Soln: 157(Toxic and/or Corrosive: Non-combustible/Water Gas: 125(Gases - Corrosive)	r-sensitive)		
용도		축/탈수소화/중성자화 반응의 촉매, 액화 로켓 추진체의 첨기 알루미늄 광택제, 티타늄 제작, 금속 및 주조물의 세정, 불소			
위험	비가연성 물질이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홈을 생성할 수 있음     물에 잘 녹고 격렬하게 반응하여 독성, 부식성, 인화성, 폭발성 가스를 발생시킴     혼합금지: 산, 염기, 아민, 암모니아, 금속, 물, 산화제     연소/열분해 생성물: 불화수소, 부식성/독성 홈				
화재 진압	'   • 하대에 다주되 요기트 아저 지역에서 본 스프레이트 이용하며 내가시킨 거   비형 17				
요령		해, 수로나 배수구로의 유출을 차단할 것	초기이격거리		
		기는 다량의 물로 냉각시킬 것 제, 알코올성포,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물	•soln: 반경 50 m •gas: 소규모; 반경 30 m 대규모: 반경 300 m		
	• 누출된 가스는 환	기시켜 분산시키거나, 다량의 물을 뿌려 희석 후 분산	방호활동거리		
누출 방제 요령	• 액제구물의 경우 중단산다트륨이나 직외문발 중와/비가면정물실 흡수 최소 50m 이상 • 노추무 화사바지/ 오쳐 시 무 저희 바지/프라스티 시티) • qas: 소규모: 풍하방향				
	인체노출 유해성 / 증상				
흡입	호흡기 자극, 화상, 기침, 숨막힘, 현기증, 두통, 오심, 무기력증, 호흡곤란, 기관지경련, 폐렴, 폐부종				
피부	화상, 동상, 홍반, 물집, 궤양,				
안구	자극, 통증, 눈물, 충	혈, 빛에 민감, 화상, 각막 혼탁, 시력상실			
경구	구강/위장관 화상, 오	심, 구토, 설사, 복통 토혈, 저혈압, 쇼크, 심혈관 허탈, 혼수, 마바	I		

🚨 국내규제	유독( 사고대		-	노출, 작업, 관리	독성	
NFPA	NFPA 코드		구조식	유해	그림	
또는 치명적 · 화재: 0(연소성이 · 반응: 1(온도상승	· 건강: 4(매우 위험. 짧은 노출에도 사망 또는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화재: 0(연소성이 없는 물질) · 반응: 1(온도상승 및 가압 시 불안정, 물과 반응하여 약간의 에너지 방출) · 특수: -		H—F			
<b>상태:</b> 기체, 액체(<1	9.5 °C)		옥탄을/물 분배계수(logKow):	-		
<b>색상</b> : 무색			인화점: -			
냄새: 강하고 자극적	냄새		발화점: -			
분자식: HF	분자식: HF 폭발한			폭발한계: -		
분자량: 20.01		용해도  • 물: 가용성(물과 혼화, 격렬히 반응)  • 용매: 벤젠(2.54%, 5°C), 톨루엔(1.80%, 5°C), m-자일 알코올 등 대부분의 유기용매에 가용			자일렌(1.28%, 5℃),	
pH: -			작업장 허용노출기준	위험노출기준		
끓는점: 19.51 ℃			L]TWA: 0.5 ppm L]STEL: -			
증기압: 917 mmHg (	@ 25 ℃	•[노동투	<sup>4</sup> ]C: 3 ppm, 2.5 mg/m <sup>3</sup> 4]TWA: 3 ppm, 2.5 mg/m <sup>3</sup>	• [NIOSH]IDLH: 30		
밀도: 6.1X10 <sup>-3</sup> g/cm	<sup>3</sup> @ 50 ℃	•[NIOSI	+]STEL: - • [DOE]PAC_PAC-1: 1 <sub>A</sub> ppm		1 <sub>A</sub> ppm	
비중: 1.002 @ 0 °C	/4 °C	_	f]TWA: 0.5 ppm f]STEL: -	<ul> <li>[DOE]PAC_PAC-2:</li> <li>[DOE]PAC_PAC-3:</li> </ul>		
<b>증기밀도:</b> 1.27 (공기	증기밀도: 1.27 (공기=1)     •[OSHA]TWA: 3 ppm       •[OSHA]STEL: 6 ppm					
			응급조치			
신선한 공기, 산소공급,	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안	공호흡(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은 피힐	것), 신속히 병원으로 이	les	
다량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적	어도 15분	성도 세척, 오염된 옷과 신발원	을 제거, 병원 이송		
눈꺼풀을 위아래로	들어 올리고 2	0-30분긴	다량의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 병원 이송		
구토방지, 무의식 시 입을 헹구고 천천히			기도를 열고 한쪽 옆으로 머리: i급, 병원 이송	를 몸 보다 낮게 하여	눕힐 것. 유의식시	



₩ 플	루오르화수소					
₩ H	ydrogen fluorid	le				
CAS번:	호	7664-39-3				
국문유	사명	불화수소산, 안티살 2B				
영문유.	사명	Hydrofluoric acid, Fluorohydric acid, Antisal 2B				
화학물		무기 비산화성 산류				
	학물질관리번호	97-1-382(유독물)				
UN번호	<u> </u>	1790(soln), 1052(gas)				
ERGCH:	응지침번호	Soln: 157(Toxic and/or Corrosive: Non-combustible/Water Gas: 125(Gases - Corrosive)	-sensitive)			
용도		축/탈수소화/중성자화 반응의 촉매, 액화 로켓 추진체의 첨기 알루미늄 광택제, 티타늄 제작, 금속 및 주조물의 세정, 불소:				
위협	• 비가연성 물질이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홈을 생성할 수 있음 • 물에 잘 녹고 격렬하게 반응하여 독성, 부식성, 인화성, 폭발성 가스를 발생시킴 • 혼합금지: 산, 염기, 아민, 암모니아, 금속, 물, 산화제 • 연소/열분해 생성물: 불화수소, 부식성/독성 홈					
	•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한 보호 하에 화재를 진압할 것         화재동반 운송사고 발생 시 대피거리           • 미세한 물분무로 화재를 진압하고 인접 지역을 냉각시킬 것         **solo: 바계 0.8 km					
화재 진압	• 화재에 노출된 용	기는 안전 지역에서 물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냉각시킬 것	•soln: 반경 0.8 km •gas: 반경 1.6 km			
요령		해, 수로나 배수구로의 유출을 차단할 것	초기이격거리			
	화새에 도울된 용기는 나당의 물로 영각시킬 것     soln: 반경 50 m     소화제: 분말소화약제, 알코올성포,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물					
	• 느츳되 가스느 화	기시켜 분산시키거나, 다량의 물을 뿌려 희석 후 분산	대규모; 반경 300 m 방호활동거리			
누출 방제 요령	• 수로, 하수, 지하 등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차단할 것 • 액체누출의 경우 중탄산나트륨이나 석회분말 중화/비가연성물질 흡수 • 노축문 화사반지/ 유청 시 문 정촉 반지(플라스티 시트) • 108: 소규모: 풍하방향					
		인체노출 유해성 / 증상				
흡입	호흡기 자극, 화상, 기침, 숨막힘, 현기증, 두통, 오심, 무기력증, 호흡곤란, 기관지경련, 폐렴, 폐부종					
피부	지부 화상, 동상, 홍반, 물집, 궤양,					
안구	자극, 통증, 눈물, 충	혈, 빛에 민감, 화상, 각막 혼탁, 시력상실				
경구	구강/위장관 화상, 오심, 구토, 설사, 복통 토혈, 저혈압, 쇼크, 심혈관 허탈, 혼수, 마비					

### 국내 · 외 주

### ❖ 불산 누출사고

🚇 국내규제	유독물 사고대		-	노출, 작업, 관리	독성	
NFPA	코드		구조식	유해그림		
또는 치명적 ( · 화재: 0(연소성이 일 · 반응: 1(온도상승 등	<ul> <li>건강: 4(매우 위험. 짧은 노출에도 사망 또는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li> <li>화재: 0(연소성이 없는 물질)</li> <li>반응: 1(온도상승 및 가압 시 불안정, 물과 반응하여 약간의 에너지 방출)</li> <li>특수: -</li> </ul>		H <del></del> F	344	# #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상태: 기체, 액체(<1	9.5 ℃)		옥탄을/물 분배계수(logKow):	-		
<b>색상:</b> 무색			인화점: -			
냄새: 강하고 자극적	냄새		발화점: -			
분자식: HF			폭발한계: -			
분자량: 20.01			용해도 - 물: 가용성(물과 혼화, 격렬히 반응) - 용매: 벤젠(2.54%, 5℃), 톨루엔(1.80%, 5℃), m-자일렌(1.28%, 5 알코올 등 대부분의 유기용매에 가용			
pH: -			작업장 허용노출기준	위험노출기준		
끓는점: 19.51 ℃		•[노동부 •[노동부	]TWA: 0.5 ppm -]STEL: -			
증기압: 917 mmHg @	⊉ 25 ℃	•[노동부	.]C: 3 ppm, 2.5 mg/m³ (]TWA: 3 ppm, 2.5 mg/m³	• [NIOSH]IDLH: 30 ppm • [DOE]PAC_TEEL-0: 0.527 ppm		
밀도: 6.1X10 <sup>-3</sup> g/cm	³ @ 50 ℃	•[NIOSH	IJSTEL: -	<ul> <li>[DOE]PAC_PAC-1:</li> </ul>	1 <sub>A</sub> ppm	
비중: 1.002 @ 0 ℃	/4 ℃	_	IH]TWA: 0.5 ppm			
<b>증기밀도:</b> 1.27 (공기	25 7 DIC + 1 77 / 12 7 1 = 1 1		JTWA: 3 ppm JSTEL: 6 ppm			
			응급조치			
신선한 공기, 산소공급,	적절한 장비를 (	이용한 인	공호흡(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은 피힐	것), 신속히 병원으로 0	les .	
다량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적이	서도 <b>1</b> 5분	정도 세척, 오염된 옷과 신발원	을 제거, 병원 이송		





구토방지, 무의식 시 아무것도 주지 말고, 기도를 열고 한쪽 옆으로 머리를 몸 보다 낮게 하여 눕힐 것. 유의식시 입을 헹구고 천천히 음료(물 또는 우유) 공급, 병원 이송

#### ❖ 불산 누출사고

#### 불화수소 규제 사항과 사고 사례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안전원고시 2017-1) [별표 1]

번호	사고대비물질	적용범위	CAS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
43	플루오르화수소 (Hydrogenfluoride)	플루오르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664-39- 3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 복 3 또는 4 형식(전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안전원고시 2017-1) [별표 2]

B(방독마스크, 높음, 기상/액상): [사고대비물질 번호] 1, **43**, 49, 50, 55, 73, 89 / 76, 78, 82, 83, 86, 90, 91, 93





Type 3

액체차단 분무차단



Q&A

본 상황에 5형식을 입으면?



❖ 메탄올? 에탄올? 노출 사고

메탄올(methanol)

에탄올(ethanol)

- 1. 고작 탄소 'C' 1개, 수소 'H' 2개 차이?
- 2. 마시거나 다량의 흡입, 또는 눈 점막과의 접촉이 낮다면 비슷?
- 3. 소주는 에탄올? 메탄올?





### ❖ 메탄올 노출 사고





#### ❖ 메탄올 노출 사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안전원고시 2017-7) [별표 1]

번 호	사고대비물질	적용범위	CAS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
4	메탄올 (Methanol)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7-56-1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 복 3 또는 4 형식(전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안전원고시 2017-1) [별표 2]

음·중간, 기상/액상):

A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높 [사고대비물질 번호] 6, 12, 36, 48, 51, 53, 56, 57, 68, 69, 71, 72, 75, 77, 87, 88 / 2, **4**, 37, 46, 70, 80, 81, 85





Type 3

액체차단



분무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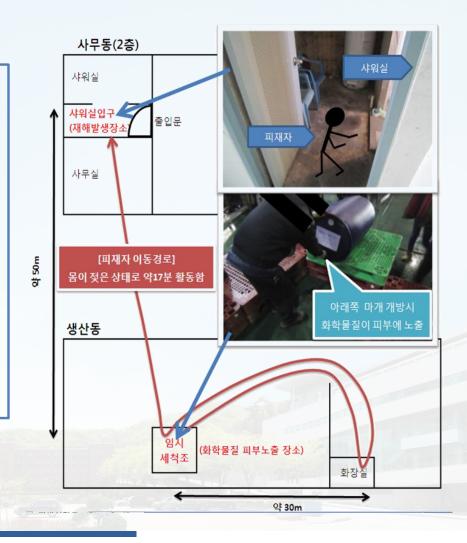




#### ❖ 피부 흡수독성: TMAH 노출 사고

#### 사례 1

2011년 12월15일 OO사업장(세척제 제조) 소속 근로자가 경기도 평택시 소재 OO사업장(파렛트 임 대)에서 파렛트 세척제 샘플 테스트를 위한 작업을 준비 하던 중 드럼통을 눕힌 상태에서 아래 뚜껑을 열자 세척제가 피해자 몸에 쏟아졌음. 그러나 피부 에 오염된 화학물질을 곧바로 제거하지 않고 몸이 젖은 상태로 활동(약 17분), 피부접촉(피부흡수)에 의한 TMAH\* 급성중독 사망재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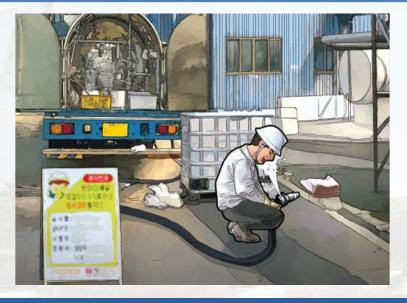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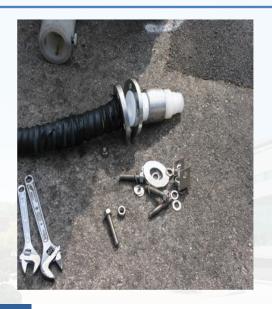


### ❖ 피부 흡수독성: TMAH 노출 사고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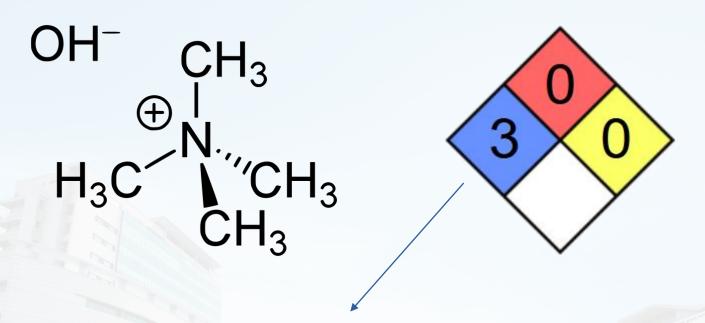
2012년 4월19일, 충북 음성군 소재 ○○사업장에서 수리를 위해 입고한 TMAH 운반 탱크로리의 탱크 내부 세척작업 후 공급라인에 잔류하고 있는 TMAH를 제거하기 위해 끝단부 커플러의 볼트와 너트를 해체하던 중 잔류압력에 의해 TMAH가 피재자의 얼굴, 목 등 부위에 분사/접촉되어 그 즉시 눈 등 안 면 부위를 세척하고, 샤워실로 이동하여 얼굴, 목 등을 다시 세척, 그럼에도 최초 피부접촉 20여분 경과 후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재해임.







❖ 피부 흡수독성: TMAH 노출 사고



아주 잠시만 노출되어도 일시적으로 심각 또는 중증의 상해를 입는 보건 등급



### ❖ 피부 흡수독성: TMAH 노출 사고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니윰,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cas번호: 75-59-2

물질구분	고유번호	혼합물(제품)함량정보	
유독물질	2002-1-5 29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니윰 및 이를 25% 이상 함 유한 혼합물	

어?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네?

전체	기본 정보	분류 표시	시험자료	기타자료
----	-------	-------	------	------

#### ○ 분류표시

신호어 : 위험



[GHS06]

M계수:-

UN No: 1835

라벨 인쇄

유해성분류			유해·위험표시 <del>문구</del>	
급성 독성-경구	3	H301	삼키면 유독함	
급성 독성-경피	2	H310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피부 부식성/자극성	1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수생환경유해성-만성	3	H412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함	

### ❖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퍼퓨릴알콜 분출 사고 (`15.09.17)



사고내용 컨테이너터미널 내 위험물 옥외저장소 보관 중 이던 퍼퓨릴알콜 탱크(20t)가 원인미상으로 폭 발 및 분출

탱크 세척 잔재물과 반응추정



대책

반응중인 퍼퓨릴알콜에 대한 방제방법 결정

- -현장에서 물과의 반응성 실험, 사용업체 연구진 지 원요청
- -사고컨테이너 안전장소로 이동, 분무 주수를 통한 냉각
- 중장비 동원 및 대응기관·업체 직원 협업 실시

## 국내 · 외 주요 화학사고 사례





### ❖ 시흥 독성가스 누출사고(`06.08.17)





- ·유해화학물질 납품업체 운전자가 유독물질 주 입구를 잘못연결하여 저장탱크내의 물질과 주 입물질간의 화학반응으로 독성가스 누출
- ·염산저장탱크에 염소산나트륨을 오인 주입 하 여 72명의 중독환자 발생



원인

- •화학물질 주입구에 물질 표시 미부착
- ·배관 내 물질 종류 및 이동방향 미표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관리자 입회 후 작업
-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취급기준 준수



❖ 인천 의약품제조업체 세정액 누출사고(`18.04.23)



### 사고내용

- ·세정액(CIP100 수산화칼륨 10~30% 함유) 소량이 누출되어 이를 수습하던 직원이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병원 이송
- •부상자 1명 발생

#### 원인

·화학사고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미 이수자를 수산화칼륨 유출 수습에 투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관리자 입회 후 작업
-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취급기준 준수



### ❖ 인천 폐기물 재생처리업체 화재로 인한 누출사고(`18.04.13)





- 사고내용 · 폐유기용제를 재생하여 생산한 아세톤을 기(IBC탱크, 1톤)에 충진 작업 중 용기에서 화 재 발생
  - √ 주변 도금업체 등으로 화재가 확산, 지정 폐기물과 유해화학물 질 등이 누출, 재산 피해 및 다수 민원 발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 부적합, 무허가 업체
  - √해당 지역은 고위험 사업장이 밀집,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 등 이 접근 곤란으로 피해 확대
  - ✓대응자가 오염물질로부터의 보호의무 소홀로 대응요원 다수피 해 및 소방차량 1대 전소

### 원인

- •고위험 사업장 밀집 지역의 안전관리 소홀
- •스파크 등의 점화원을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유 해화학물질로부터 미 제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관리자 입회 후 작업
-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취급기준 준수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 %B9%99/%EC%A0%95%EC%A0%84%EA%B8%B0%EC%9E%AC%ED %95%B4%20%EC%98%88%EB%B0%A9%EC%9D%84%20%EC%9C %84%ED%95%9C%20%EA%B8%B0%EC%88%A0%EC%83%81%EC %9D%98%20%EC%A7%80%EC%B9%A8

❖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시흥 정왕동 도로 위 불산 적재 컨테이너 전복(`13.05.13)





- 사고내용 · 불산 드럼(230L 용기, 80개, 18톤)컨테이너 차 량으로 이송 과정 중 우회전하면서 전복 되어 불산(55%) 약 40L 누출
  -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 위 유출로 주민에게 대피 명령
  - √주민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대피가 아닌 구경으로 일관
  - ✓오염물질 처리에 지장 초래(불산 처리를 위한 공간확보 불가)

- ·유해화학물질 운송관리 및 운전 부주의
- · 과속·차량전복·적재불량으로 인한 추락
- ・노후차량에 의한 이송탱크 누출

- •유해화학물질 운송 시 안전관리 교육강화
- •차량사고 시 관계기관 즉시 신고의무 준수

❖ 시흥 정왕동 도로 위 불산 적재 컨테이너 전복(`13.05.13)





#### ❖ 안산 트리크로로에틸렌(TCE: 특별관리물질) 중독사망(`15.06.02)





- 사고내용 . 트리클로로에틸렌(TCE)로 부품을 세척하는 세 척조 내부 청소작업 중 작업자 2명 중독
  - √인명피해 중독 사망 2명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 준수(영업허가대상 미만 업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용기에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주 입판매

- ㆍ취급 물질에 대한 건강유해성 등 정보부족
- •작업자 개인보호장구 미 착용, 분류표시 위반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미 실시

#### 대책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강화
- ·밀폐공간 작업 시 잔류물질 확인 및 개인보호장 구 착용



❖ 안산시 단원구 PCB 제조업체(`17.09.27)

사고내용

과산화수소 보충을 위해 유입펌프 작동 중 Overflow 되어 염산저장 탱크 내 유입으로 유독가스 발생

피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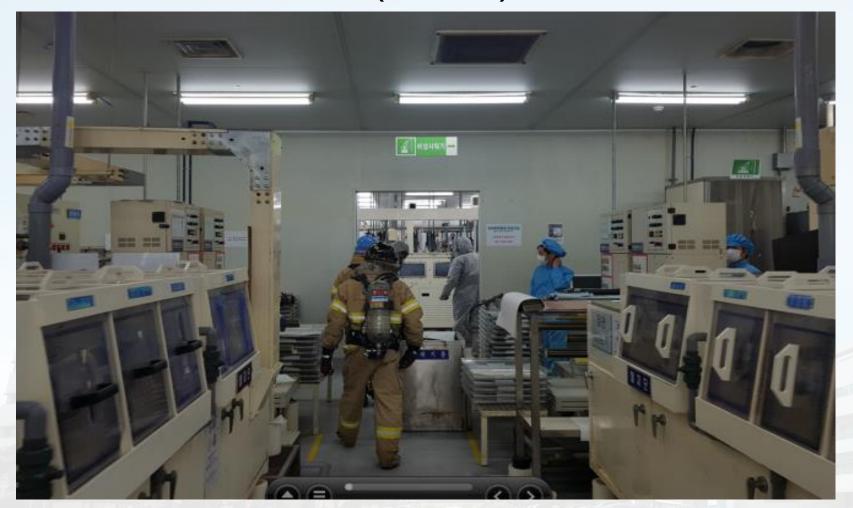
유독가스 흡입으로 34명 병원진료

이슈사항

- 유입펌프 작동시킨 상태에서 타 작업을 위해 현장이탈
- ·사고발생 시 수위센터 고장
- •배출밸브 이송장치가 잠겨있어 타 저장탱크로 역류 유입
- 과산화수소와 염산이 반응하여 유독가스 발생



❖ 안산시 단원구 PCB 제조업체(`17.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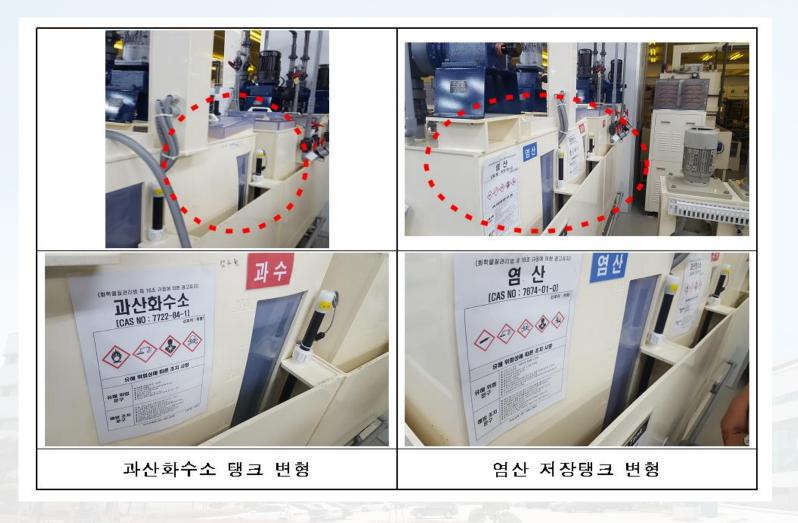


❖ 안산시 단원구 PCB 제조업체(`17.09.27)



사고지점: 염화수소(HCI) 2~10ppm, 염소(Cl2) 2ppm 내외 측정

❖ 안산시 단원구 PCB 제조업체(`17.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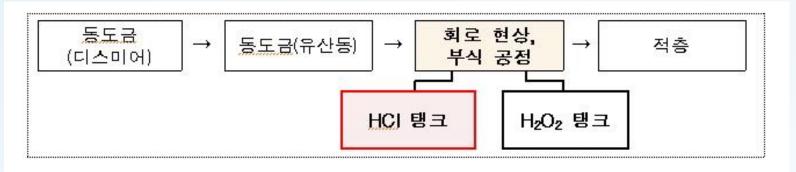


❖ 안산시 단원구 PCB 제조업체(`17.09.27)





❖ 안산시 단원구 PCB 제조업체(`17.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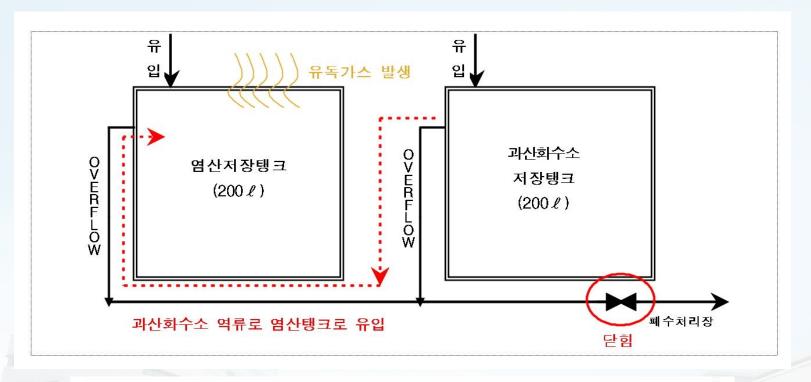
**염산 35%**(유독물·사고대비물질 / CAS NO. 7647-01-0) **과산화수소 35%**(유독물·사고대비물질 / CAS NO. 7722-84-1)

#### \*특이사항

- 작업자 모두 병원진료 중으로 초기 사고경위 파악 불가
- 염산 탱크 내 기포 발생, 염산 탱크 상부 뚜껑 개방되어 있음, 주변 녹색액체
- 개방된 염산탱크 상부에서 염화수소, 염소 측정됨
- 과산화수소 탱크 변형(배부름현상), 염산 탱크 변형(배부름 현상)
- 과산화수소 탱크는 기존에 염화제이철 탱크로 사용 (에칭액 변경)



❖ 안산시 단원구 PCB 제조업체(`17.09.27)



-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의 수위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일정 수위가 되는 경우 **유입펌프의 작동이 중단**되나
- **사고 발생 시 수위센서 고장**으로, 작업자가 **수동**으로 가동하여 일정 수위 도달 시 작동을 중지시켰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과산화수소가** 월류 (Overflow)되어 **염산 저장탱크로 유입**





#### ❖ 안산 기업부설 연구실 화학 사고(`16.01.20)



- 사고내용 ·전자재료용 식각액 폐액처리를 위해 폐액통에 넣는 과정 중 남아 있던 소량의 다른 화학물질 과 반응하여 폭발 추정
  - √120여 입주업체의 1,000여명 대피, 38명 병원진료



#### 원인

- ·잔재물이 남은 과산화수소 용기를 폐액통으로 사 용 반응
- •작업자 실수로 인한 연구실 화학사고



#### 대책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항상 반응 부를 검토
- •빈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처리



❖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초대형 폭발(`15.08.12)

#### ▮사고개요

- 2015.8.12(수) 23:30분경 중국 텐진항 물류회사 위험물 적재차고에 야적된 컨테이너에서 최
   초 폭발이 발생한 후 다른 창고로 번져 30초 후 2차 폭발이 발생하여 사고 확대
- 사망 173명, 부상 797명(중상 58 포함), 실종 8명 [추정치]
- > 사고원인물질(추정):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시안화나트륨, 탄화칼슘 등





❖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초대형 폭발(`15.08.12)

#### ▮시안화나트륨

- > 물류창고 보관중이던 시안화나트륨이 초대형 폭발사고로 대부분 사라짐
- > 시안화나트륨 700ton 중 150ton만 회수
- 사고지점 주변 공기, 토양,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
- 가고 주변 곳곳의 토양과 수질이 시안화물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 확인

#### ■오염정도

- > 경계지역 내 26곳 측정결과 8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시안화물 검출(기준치의 최대 356배 초과)
- 오염물질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변 배출구를 모두 봉쇄했다고 설명,
   그러나 폭발현장에서 6km 떨어진 곳에서 대량의 물고기 사체가 발견
- 중국 환경당국은 물고기 떼죽음은 이번 폭발과 관련 없다고 결론, 시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고 불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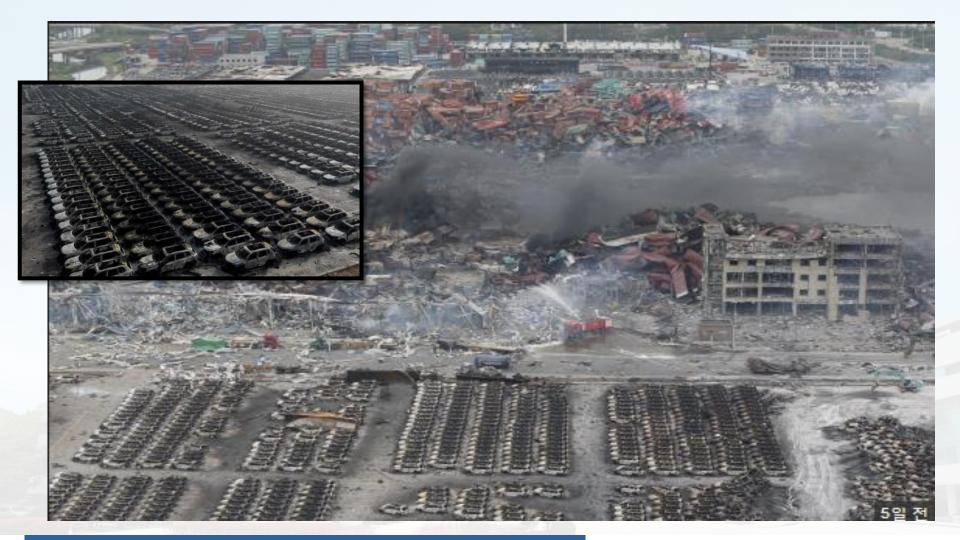


❖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초대형 폭발(`15.08.12)





❖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초대형 폭발(`15.08.12)



❖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초대형 폭발(`15.08.12)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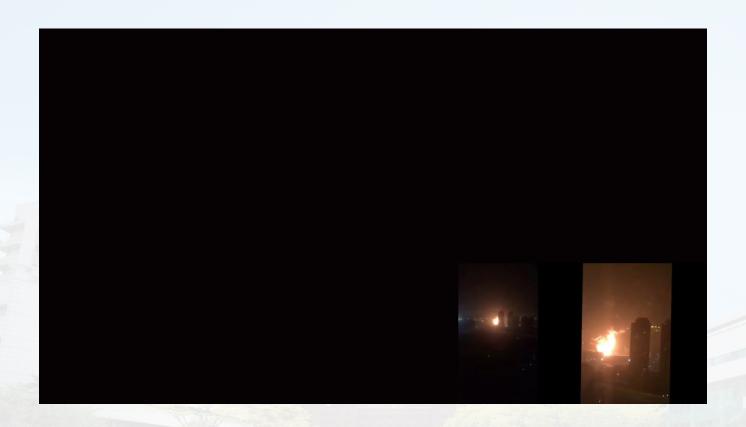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초대형 폭발(`15.08.12)





❖ 미국 일리노이즈 무수암모니아 누출(`00.06.13)



#### 화학사고 개요 및 사례

	Properties		
Chemical formula	NH <sub>3</sub>		
Molar mass	17.031 g/mol		
Appearance	Colourless gas		
Odor	strong pungent odour		
Density	0.86 kg/m <sup>3</sup> (1.013 bar at boiling point)		
	0.769 kg/m <sup>3</sup> (STP) <sup>[2]</sup> 0.73 kg/m <sup>3</sup> (1.013 bar at 15 °C) 681.9 kg/m <sup>3</sup> at -33.3 °C (liquid) <sup>[3]</sup> See also Ammonia		
	(data page) 817 kg/m³ at -80 °C (transparent solid) <sup>[4]</sup>		
Melting point	-77.73 °C (-107.91 °F; 195.42 K) (Triple point at 6.060 kPa, 195.4 K)		
Boiling point	-33.34 °C (-28.01 °F; 239.81 K)		
Critical point (T, P)	132.4 °C (405.5 K), 111.3 atm (11,280 kPa)		
Solubility in water	47% w/w (0 °C) 31% w/w (25 °C) 18% w/w (50 °C) <sup>[5]</sup>		
Solubility	soluble in chloroform, ether, ethanol, methanol		
Vapor pressure	857.3 kPa		
Acidity (pK <sub>a</sub> )	32.5 (-33 °C), <sup>[6]</sup> 10.5 (DMSO)		



#### 화학사고 개요 및 사례

#### ❖ 암모니아 유해 / 위해 특성

○ 물질번호 및 함량정보

#### 물질정보

• 암모니아: 무수물암모니아; 암모니아가스

Ammonia

• CAS 번호: 7664-41-7

물질구분	고유번호	혼합물(제품)함량정보
기존화학물질	KE-01625	
유독물질	97-1-184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사고대비물질	44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대량생산화학물질	V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320	

○ 분류표시

신호어 : <mark>위험</mark>



[GHS02]



[GHS04]



[GHS05]



[GHS06]



[GHS09]

M계수:-

UN No: 1005, 2073, 2672, 3318

라벨 인쇄



#### 화학사고 개요 및 사례

#### 국내 · 외 주요 화학사고 사례

#### ❖ 유해 / 위해 특성

암모니아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국내규제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	노출, 작업, 관리	가연성, 독성		
NFPA 코드				물질분류 및 표시			
• 화재: 1(가열되어야 발화하는 물질) • 반응: 0(화재노출에 안전, 물과 반응하지 않음) • 특수: -			예방조치 문구: P210 P303+P361+P353, P3 P377, P381, P391, P4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 문구: H400, H280, H220, H314, H331 예방조치 문구: P210, P260, P264, P271, P273, P280. P301+P330+P331, P303+P361+P353, P304+P340, P305+P351+P338, P310, P311, P321, P363, P377, P381, P391, P403, P403+P233, P405, P410+P403, P501			
• 독성: 흡입, 섭취, 피부 흡수 시 치명적일 수 있음. 증기는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함 •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 또는 폭발할 수 있음 • 산과 격렬히 반응하고 폭발성/부식성 가스 형성 • 물에서의 용해성이 크며, 물에 녹아 부식성 액체 형성 • 혼합 • 적재금지: 수은, 할로겐류, 차아염소산염, 산화염소(I), 무수불화수소산, 과산화수소, 산화크롬(VI) 이산화질소, 염화크로밀(VI), 염화티오닐, 과염소산마그네슘, 과산화이중황산염, 오산화인, 아세트알데하이드산화에틸렌, 아크롤레인, 염화금(Ⅲ), 산화제, 산, 은과 아연 염류 • 연소/열분해 생성물: 독성 흄(질소산화물)							
화재 진압 요령	<ul><li>탱크화재의</li><li>배출안전정</li><li>탱크가 화</li><li>수로, 하수</li><li>용기내부로</li></ul>	• 가스가 분산될 때까지 누출지역 격리, 가능하다면 진압 전 가스 흐름을 멈추게 할 것 • 탱크화재의 경우, 최대한 먼 곳에서 무인호스지지대 또는 방수포로 진압 • 배출안전장치의 소리가 커지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 즉시 철수 • 탱크가 화재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절대 접근 금지 • 수로, 하수구, 배수구로의 유출 차단, 지하실 등 밀폐된 장소로의 유입 차단 • 용기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파손된 실린더는 전문가가 처리하도록 함 • 소화제: 물, 일반적인 폼,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					
• 유출원 및 누출원에 직사주수 금지, 오염지역 격리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 차단 • 경기 억제 및 증기구름 이동 방지를 위해 분무주수 • 처리수와 유출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함 • 너희 장비 양악의 자금시 공기호호기 악전 밀펜형 증기 보호의 • 나흐 장비 양악의 자금시 공기호호기 악전 밀펜형 증기 보호의 • 나흐 장비 양악의 자금시 공기호호기 악전 밀펜형 증기 보호의			유출 시 방호활동거리 •소규모: 풍하방향 낮 0.1 km, 밤 0.2 km •대규모: 풍하방향 낮 17 km 이내 밤 4.3 km 이내 ※ 풍속원병기에 따름				
노출경		응급조치					
흡입	인공호흡은 표	신선한 공기, 산소공급, 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피해자가 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한 경우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은 피할 것), 보온 유지 후 병원 이송					
피부	다량의 물을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최소 20분 이상 세척,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 보온 유지 후 병원 이송					
안구		눈꺼풀을 위아래로 들어 올리고 최소 20분 이상 다량의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 보온 유지 후 병원 이송					
경구		구토방지, 구토 발생 시 기도를 열고 한쪽 옆으로 머리를 몸보다 낮게 하여 눕힐 것, 의식이 있을 경우물로 입을 헹구고 구토 및 호흡기계 질환이 없으면 물 공급, 보온 유지 후 병원 이송					





#### 화학사고 개요 및 사례

#### 국내 · 외 주요 화학사고 사례

#### ❖ 유해 / 위해 특성

암모니아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물로 입을 헹구고 구토 및 호흡기계 질환이 없으면 물 공급, 보온 유지 후 병원 이송





❖ 유해 / 위해 특성

알아야 산다!





# **Contents**



# 화학사고 시대 대의 대대 당범

- ❖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 방법
- ❖ 화학사고 초기대용





#### 우리의 준비 상태부터!

1. 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합동방재센터)

시흥: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산: 대전, 세종, 충남

익산: 전라북도

여수: 광주, 전라남도, 제주 울산: 부산, 울산, 경상남도

구미: 대구, 경상북도 충주: 강원도, 충북

❖ 구성

- 환경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
- 119화학구조팀 소방청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직원
- ▶ 산업안전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
- ▶ 가스안전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직원
- 지자체팀 소속 기초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광역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우리의 준비 상태부터!

#### 2.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중방센터)

□ 제3조(명칭 및 소속 등) ①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라 한다) 내 명칭, 관할지역은 <표 1>과 같다.

<표 1>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등

중방센터의 명칭	소 속	방재센터 내 명칭	관할지역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중부지 방고용 노동청	시흥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부산지 방고용 노동청	울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구지 방고용 노동청	구미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여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전라북도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전지 방고용 노동청	충주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충청북도	

- ②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방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를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 ③ 각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관할지역 외 사업장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를 지원·협조할 수 있다.
- ④ 각 중방센터의 장은 다른 중방센터의 장이 업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우리의 준비 상태부터!

#### 3. 119화학구조센터: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119화학구조센터(이하 "화학센터"라 한다) 근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 □ 제3조(관할구역) ①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흥119화학구조센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한다.
  - 2. 구미119화학구조센터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관할한다.
  - 3. 울산119화학구조센터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 4. 익산119화학구조센터는 전라북도를 관할한다.
  - 5. 여수119화학구조센터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 6. 서산119화학구조센터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한다.
  - 7. 충주119화학구조센터는 강원도, 충청북도를 관할한다.
  - ② 화학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지시에 따라 관할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 1.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 3. 그 밖의 소방청장이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삭제



- ❖ 사고사례(레바논 질산아모늄 폭발, `20.08.04)
  - 수도인 베이루트의 시내 인근 항구인 베이루트항에서 발생
    - ✓ 2015년 텐진항 폭발 사고를 크게 능가하고 있는 사건으로 추정
  - 사고물질 : 질산 암모늄 2,750톤 이상 보관
    - ✓ 농업용 비료 원료, 고온이나 가연성물질과 접촉시 폭발
  - 피해정도
    - ✓ 사망자 약 192명, 부상자 6천여명, 실종자 추정 중, 이재민 300,000여명
    - ✓ 폭발이 일어난 곳에서 10 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의 피해 (유리창 박살)
    - ✓ 베이루트에서 두 번째로 큰 곡물 저장 창고가 파괴
    - ✓ 독일 지질연구소 GFZ는 폭발 위력이 규모 3.5지진과 맞먹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충격은 240 km 떨어진 키프로스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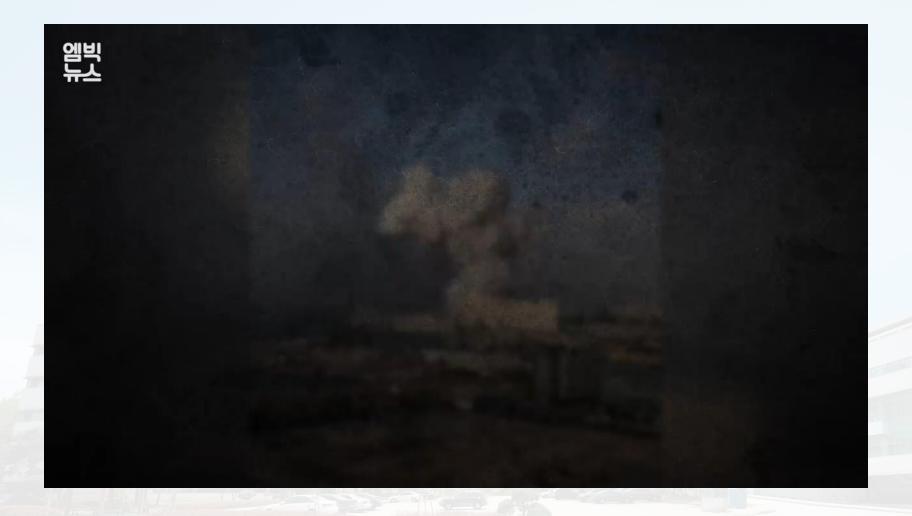
❖ 사고사례(레바논 질산아모늄 폭발, `20.08.04)







❖ 사고사례(레바논 질산아모늄 폭발, `20.08.04)





- ❖ 사고사례(레바논 질산아모늄 폭발, `20.08.04)
- ❖ 인근 병원 상황



연합뉴스



- ❖ 사고사례(안성 물류공장 자연발화, `19.08.06)
  - 추정 물질
    - □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 아조화합물 등 지정보관수량 이상 보관,대기온도 40도가 넘으면서 자연발화
      - 아조화합물 약 4 ton (지정수량 200kg)
      - 보관 중인 6종 물질 총 보관량 약 38 ton으로 추정
  - 소방관 1명 순직, 11명 사상자 발생







# **Contents**



# 방제장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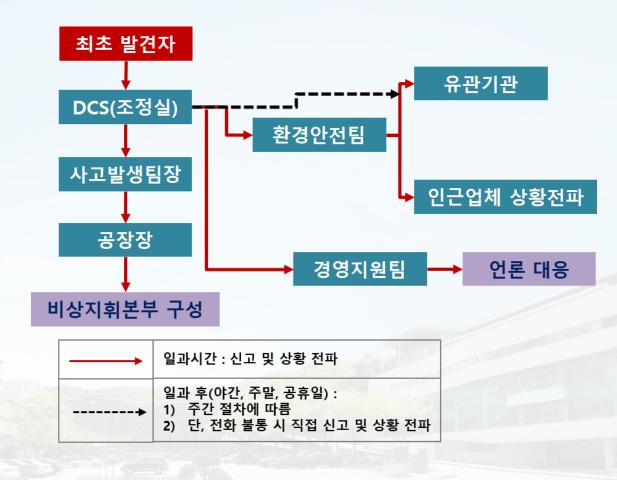
- ❖ 화학물질 누출 시 안전조치
- ❖ 방제 장비 및 방법
- ❖ 사고 방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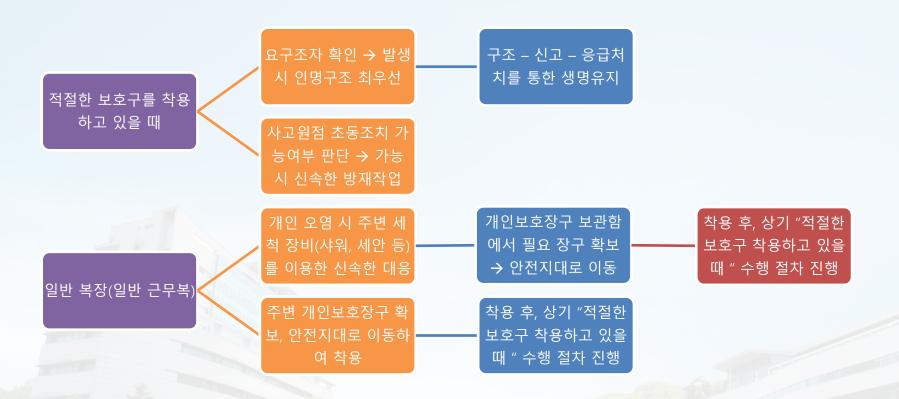


- ❖ 자체 비상연락망 숙지부터
-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파를 위해 비상대응 담당자의 연락망을 도식화한 비상연락절차
  - ✓ 주·야간/공휴일 사고 신고체계
  - ✓ 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락처
  - ✓ 인근업체 및 유관기관(지자체, 소방, 환경청 등)





#### ❖ 자체 비상연락망 숙지부터



- ❖ 개인보호장구 보관함에서 보호복을 입는 경우는 보관함 장소가 안전할 경우로 제한됩니다.
- ❖ 반드시 사고 원점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보호복을 가지고 이동하여 착용하도록 합니다.



#### ❖ 액상 물질 방제

#### 소량 누출 시 대응방법

- · 건조된 모래, 유처리제 등을 활용하여 회수
- · 대량의 물로 희석(세정) 시킴

#### 대량 누출 시 대응방법

- · 토사 등 비가연성물질을 활용하여 누출확대 방지를 함
- ・ 증기가 발생할 경우 분무 주수 또는 중화제 분사하여 증기발생을 억제시킴
- · 누출물질의 특성에 맞는 산, 알칼리 중화제를 사용하여 중화시킴

#### 주의사항

- ・분무주수 시 물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유독, 폭발, 부식성 가스 주의
- ・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맞게 방제약품 사용
- · 2차 생성물 폐기처리 시 강산화제 등 충격에 폭발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발생하므로 취급 시 주의





#### ❖ 고체상 물질 방제

#### 누출시 방제방법

- · 다량의 물로 씻어 내림(소량의 경우)
- ・ 나중에 처분할 수 있도록 도랑이나 둑을 만들어 가두어 둠
- ・ 누출물을 흙, 모래 등으로 덮어 유출을 방지
- 물질의 특성에 맞는 중화약품 사용하여 중화처리 → 독성 낮춤
- · 다량의 물로 천천히 <u>적셔줌</u>
- ・ 과염소산 염 등 강산화제의 누출 시 충격, 마찰에 주의하여 용기에 회수
- ・ 분말 등이 비산한 경우 불연성 습기 없는 용기에 회수

#### 주의사항

- · 물과의 반응성이 위험한 물질일 경우 플라스틱 시트나 방수성 천으로 덮어서 물과의 접촉을 방지함
- ・활성탄 사용시 흡착열에 의해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음



## 방제 장비 및 방법

#### ❖ 방제 장비

#### 누출 방지창(쐐기)









파이프 실링 슬리브

## 방제 장비 및 방법

#### ❖ 방제 장비





## **Contents**



# 개인보호장구 선정

- ❖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
- ❖ 개인보호장구 종류







❖ 개인보호장구 착용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규정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운송자 포함)가 기체, 액체 증기, 고체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취급자의 생명 보호 및 부상을 사전에 방어하고, 사고초기 대응(밸브 차단,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큰 피해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 2017.12.1., 일부개정
-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 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호흡보호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 폭발 · 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 4. "보호복"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 폭발 · 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 5. "안전장갑"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손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 2017.12.1., 일부개정
-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 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는 별표 2와 같다.
- ❸ 보호장구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하여야 한다.



#### ❖ 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

#### 제6조(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

-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 1.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반자가 운전 중일 경우
  - 2.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 3.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 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2.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험실에서 저용량(5L 용기 이하) 유해화학물질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제4조1항 관련, 별표1)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번호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
1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0-00-0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 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2	메틸하이드라진 (Methylhydrazine)	메틸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0-34-4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부분) 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3	포름산 (Formicacid)	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4-18-6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부분) 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4	메탄을 (Methanol)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7-56-1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부분) 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5	<mark>벤젠</mark> (Benzene)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1-43-2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부분) 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6	<b>염화메틸</b> (Methylchloride)	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4-87-3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 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7	메틸아민 (Methylamine)	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4-89-5	암모니아용 방독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 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8	<b>시안화수소</b> (Hydrogencyanide)	시안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4-90-8	시안화수소용 방독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 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9	염화비닐 (Vinylchloride)	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1-4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 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10	이황화탄소 (Carbondisulfide)	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15-0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부분) 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안전원고시 2017-1), [별표 2]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종류

	사고대비물질 분류*					
작업상황	A (24종)	B (15종)	C (9종)	D (15종)	E (23종)	F (11종)
① 개방형 기기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② 밀폐형 기기작업	송기착용	반면착용	기본	반면착용	기본	기본
③ 상·하차, 원료이송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④ 보수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기본
⑤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⑥ 시험작업	송기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⑦ 기타 작업(차량운반, 밀폐용기 창고적재, 일 상점검, 보안경비 등)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 사고대비물질 분류	
그룹명(호흡보호구 형태, 유해성 등급, 성상)	사고대비물질 번호
A(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높음·중간, 기상/액상) :	6, 12, 36, 48, 51, 53, 56, 57, 68, 69, 71, 72, 75, 77, 87, 88 / 2, 4, 37, 46, 70, 80, 81, 85
B(방독마스크, 높음, 기상/액상) :	1, 43, 49, 50, 55, 73, 89 / 76, 78, 82, 83, 86, 90, 91, 93
C(방독마스크, 중간, 기상/액상):	7, 9, 11, 13, 42, 44, 74 / 79, 95
D(방독마스크, 방진·방독 겸용마스크, 높음, 액상):	8, 10, 16, 18, 22, 24, 31, 34, 35, 40, 47, 54, 84, 92, 94
E(방독마스크, 방진·방독 겸용마스크, 중간·낮음, 고상/기상/액상):	20, 29 / 97 / 3, 5, 14, 15, 17, 19, 21, 23, 25, 26, 27, 28, 30, 32, 39, 45, 52, 5 8, 61, 96
F(방진마스크, 낮음, 고상):	33, 38, 41, 59, 60, 62, 63, 64, 65, 66, 67

- ※ 반면형 호흡보호구 착용시는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 ※ '기본'은 작업 상황에 맞는 최소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 송기식 및 양압식 공기호흡기

❖ 1형식 보호복 착용 방법

Q & A





Venture 1st 호서대학교

# -수고하셨습니다-

